

**직업교육법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4134 |
|----------|-------|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김문수 · 송재봉 · 양부남  
김준혁 · 고민정 · 이수진  
김 윤 · 박해철 · 박성준  
강경숙 · 진선미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업교육에 대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여러 법률에서 분절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률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직업교육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초·중등, 고등, 평생에 이르는 단계별 직업교육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또한 존재하지 않음.

한편 저출산·고령화, 디지털·AI 전환,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여러 법률에 분산된 직업교육 규정을 정비하고, 단계별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직업교육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추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 및 국가의 사회

-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모든 국민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복 추구 및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직업교육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직업교육·직업교육기관·직업교육교원 및 현장실습의 개념을 정의하며,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다. 직업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5년 단위의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분석, 국가직업교육위원회 및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라. 직업교육 단계를 초·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직업교육과정 간 연계 및 유연한 운영, 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직업교육 진흥을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의 지정·운영, 현장실습 지원, 소외계층 및 중년·장년층에 대한 지원, 직업교육교원의 임용 및 연수, 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직업교육교원 및 학

습자의 안전 확보,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 직업교육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직업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 및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교육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② 직업교육은 산업 및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업현장과 협력을 통하여 일·학습·삶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직업교육을 이수한 자는 그 자격, 학력 및 역량에 상응하는 정당한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누구든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직업 탐색부터 직

무 수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소양과 직무수행역량(지식·기술·태도 및 그 밖에 관련 역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기초직업교육: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직업 선택과 수행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기본 수준의 직업교육

나. 전문직업교육: 다양한 산업 및 직무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역량을 심화하여, 취업, 창업 및 직무 수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전문 수준의 직업교육

2. “직업교육기관”이란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직업계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나. 고등직업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평생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직업교육교원”이란 직업교육기관에서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및 「평생교육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기관과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진로·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직업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실시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시설 및 사업장이 직업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체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직업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직업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직업교육 추진체계

제6조(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라 국가직업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을 위한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
4. 직업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방향
5. 직업교육기관 간 및 산업체와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협력
6. 직업교육기관의 국제협력
7. 직업교육 관련 제도 및 규정의 개선
8. 학습자의 학습권 및 안전보장
9. 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
10. 그 밖에 직업교육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장, 직업교육 관련 협의체, 산업계·노동계 및 학습자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

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관련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장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직업교육 실시 현황의 조사·분석)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직업교육의 실시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장등, 직업교육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직업교육 실시 현황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직업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직업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직업교육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 정책의 수립·조정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직업교육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산업계·학계·직업교육기관의 관계자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직업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도지사는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 간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 이수자의 취업·창업 지원 및 일자리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재직자의 직업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역 직업교육 정책의 실행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장 직업교육 운영

- 제10조(초·중등단계 직업교육과정)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학습자의 적성, 흥미 및 진로를 고려하여 기초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직업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직업계고등학교는 현장실무에 기반한 전문직업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도제교육 등 산업체 공동 교육과정
  2. 자격 취득 교육과정
  3. 그 밖에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제11조(고등단계 직업교육과정) ①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와 재직자·성인학습자의 재취업 및 직무역량 향상 수요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2.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의 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직업교육과정
3. 1년 이내의 단기 전문직업교육과정
4. 그 밖에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장이 직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이수 결과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평생단계 직업교육과정) ① 평생직업교육기관은 학습자의 생애 주기와 직업 전환 수요를 반영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직업능력 향상교육
2.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3.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장이 직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이수 결과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직업교육과정의 연계 운영) ① 직업교육기관은 직업교육과정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인력·시설·설비 및 직업교육 관련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기관은 산업계 및 다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직업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개발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과정의 이수 결과는 관련 법률에 따른 학점, 수료증 또는 자격증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과정의 연계, 공동 개발 및 운영, 이수 결과의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업교육과정의 유연한 운영) ① 고등직업교육기관 및 평생직업교육기관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과정을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수업의 방법, 학점의 인정 등에 있어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고등직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에서의 실무경험이나 정규 학위과정 외의 연구·학습경험이 해당 기관의 교육과정과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가 진학, 학위과정, 취업, 자격취득 등과 연계되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방식과 평가·인정의 기준·절차 및 그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문직업교육과정의 평가 및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직업교육기

관 및 평생직업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직업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문직업교육과정을 다른 전문직업교육과정보다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평가 및 인증의 운영체계 마련, 기준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제16조에 따른 국가직업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평가 및 인증의 기준, 절차,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직업교육 진흥

제16조(국가직업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체계적 운영 및 정책 지원을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연구·분석
2. 직업교육 정책 및 제도의 운영 성과 평가와 효과성 연구
3. 산업 수요 조사·분석 및 직업교육 정책 개발 지원

4. 직업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운영 지원

5. 직업교육교원의 연수·재교육 지원

6.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지원 및 성과 관리

7. 직업교육과정의 평가·인증 기준 개발 및 운영 관리

8. 직업교육 이수자의 진로, 취업 및 창업 지원

9. 직업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10. 직업교육 관련 통계 수집·관리 및 성과 분석

11.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업교육 관련 연구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현장실습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기관의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산업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및 산업체와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소외계층 및 중년·장년층의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직업교육 소외계층이 차별 없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기관이 중년·장년층 및 고령

층의 직업 전환 및 재취업 과정을 개발·운영하도록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직업교육교원의 임용 및 연수) ① 직업교육기관은 현장 직무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 경력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직업교육교원으로 우대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수 등 직업교육교원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① 직업교육기관은 지역 산업과 지역 사회의 직업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기관은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교육교원 및 학습자의 안전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교원 및 학습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기관은 현장실습 및 교내 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습 과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기관에 시설, 장비 및 보호구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직업교육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의 발전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